

연구보고 20-R20

#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책임연구원 황진구

공동연구원 김지연

NYPI



---

연구보고 20-R20

---

#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저 자 황진구, 김지연

연구진 책임연구원\_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청소년의 가출 원인과 가정 밖 청소년의 특징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청소년쉼터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확대, 새로운 정책 수요 증대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지원체계의 모색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의 구조와 기능 등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음.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관련 현황에 대한 분석보다는 청소년쉼터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와 더불어 자립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관련 복지시설 개편방안 제안에 초점을 두었음.
-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청소년쉼터의 특징을 관련 변천 과정 및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더불어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청소년쉼터의 종합평가 결과 중 쉼터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검토하였음.

- 둘째,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을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셋째,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 정립, 청소년복지시설 개념의 개정 및 설치 방안 등을 제안하고, 기능 중심의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안) 등을 제안하였음.
-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 첫째, 가출청소년 현황이나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결과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분석하였음.
  - 둘째, 가출청소년 현장전문가, 관련 학과 교수, 관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셋째, 가출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쉼터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구조개편 방향 등에 대한 FGI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 넷째,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마련된 청소년복지시설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 의견수렴회,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간담회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 3. 연구의 주요 결과

#### 1) 청소년쉼터 현황 및 종합평가 결과 분석

- 1992년 서울YMCA의 청소년쉼터를 시초로 하여 설치된 청소년쉼터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음.
- 1998년 5개 광역시에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되었고, 2001년부터 청소년백서에 청소년쉼터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였음.

- 2006년부터는 청소년쉼터의 유형을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과 양적 증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2010년의 83개 시설에서 2020년 현재는 140개 시설(자립지원관 8개소 포함)이 운영 중임.
- 2010년 대비 2020년 현재 쉼터유형별 증가세를 보면, 일시청소년쉼터가 22개 시설, 단기청소년쉼터가 12개 시설, 중장기청소년쉼터가 15개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이 8개 시설이 각각 증가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여 왔음.
- 현재 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시설 수 및 유형별 분포의 불균형, 동일 시도 내에서의 유형별 불균형 현상이 심한 상황이며, 청소년쉼터 유형별 평균 이용 청소년 정원의 불균형도 심한 상황임.
-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분석에 따르면, 일시쉼터의 경우 이용자 부분이나 지역 사회연계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또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에서 아웃리치 관련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의 경우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용자 관련 부분 및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특히 이용자 현황 지표가 가장 낮게 평가됨.
- 위의 쉼터 현황 및 평가결과 등을 기반으로 '가정밖 청소년' 개념 도입 필요성, 청소년쉼터의 수 부족 및 유형별·지역별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의 필요성, 현재의 이용기간 기준의 쉼터 유형구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음.

## 2)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 비교

- 현행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체계의 특징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체계와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시·도 단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 부재와 자립지원 대상인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의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임.
-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법인과 시설별로 자립지원 내용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시설 입소기간 중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와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없고, 시설 퇴소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음.
- 가출청소년과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를 검토를 통해,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의 필요성, 청소년쉼터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가출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실태 법정 조사 추진,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확인하였음.

#### 4. 제언 : 가출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

##### 1) '가정 밖 청소년' 법적 개념 정립 방안

- 청소년쉼터가 초기에 설립되어 정착되었던 시기의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에 비해 최근의 가출 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의 기능과 역할, 유형 개편 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을 정립이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법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쉼터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을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로 설정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학교밖 청소년 관련 법령과 같이 (가칭)'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이 진행되어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2) 청소년복지시설 법적 개념 개정 방안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자립관의 경우 이용 가능한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주요 기능에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와 더불어 '자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개정(안)을 제안하고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 3) 청소년복지시설의 균형적 설치를 위한 법 개정 방안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전체 시설 수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적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별, 유형별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임.
- 특히 청소년쉼터의 균형적인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가정 밖 청소년 규모 등이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파악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청소년복지 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 규모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균형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으로 제안함.

#### 4)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이라는 측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제안하였음.
- 첫째, 현재의 청소년쉼터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즉,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침실의 정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현재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내용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의 침실 관련 사항에 “1실 2인 이하 수용 권장 (신설)”을 개정(안)으로 제안함.
-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함.

#### 5)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방안

- 청소년복지시설이 전국적인 차원과 더불어 동일 시도내에서의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실은 쉼터 유형별 규정된 기능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이용기간 중심’의 청소년쉼터 유형 기준을 ‘기능 중심’으로 검토하여 전체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의 유형 개편(안)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안하였고, 전체적인 유형 개편과 관련되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음.

###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안: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현행 : 기간 중심)

(개편 안 : 기능 중심)

1) 일시쉼터 (일시-7일) - 일시이동형 쉼터	(변경) ⇨	1) 아웃리치센터 (일시)
- 일시고정형 쉼터(7일)	(변경) ⇨	2) 청소년쉼터 - 일시형 청소년쉼터 (3일)
2) 단기쉼터 (3개월)	(통합) ⇨	- 일반형 청소년쉼터 (3년)
3) 중장기쉼터 (3년)		
4) 자립지원관 (1년)	⇨ (유지)	3) 자립지원관 (1년)

- 또한 개편된 세부 유형별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 6)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개편 방안

-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시설 유형별 기능 변화에 따라 종사자의 업무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며 변화된 업무 등을 고려한 종사자 배치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종사자 배치기준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검토, 새롭게 설정된 유형별 주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배치기준 개편 관련 원칙을 설정하고, 유형별 종사자 구분에 따른 배치기준(안)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 (안)

종사자 구분	아웃리치 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일시형 쉼터	일반형쉼터				
			~9명*	10~ 14명	15~ 19명	20~ 24명	
시설장	1	1	1	1	1	1	1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2	3	2	3	3	5	4
거리상담 전문요원	3	3	-	-	-	-	-
야간보호 상담원	-	2	2	2	2	2	-
행정원 또는 취사원	1	1	1	1	2	2	1
합 계	7	10	6	7	8	10	6

\*) 수용정원이 5명 이하 시설의 경우 보호·상담원/자립지원요원과 야간보호상담원을 각 1명으로 할 수 있음.

- 위의 표에서 제시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 (안)의 경우 명확한 업무나 직무분석 등에 기초하지 못하고 기존 배치기준과 현 지원 인건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내용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닌 제안이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유형개편(안)과 더불어 각 유형별 종사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보다 섬세한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연구보고 20-R20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

## II. 청소년쉼터 현황과 종합평가 결과 분석

- 1. 청소년쉼터 변천 과정과 현황 ..... 9
- 2.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주요결과 분석 ..... 30
- 3. 소결 및 시사점 ..... 46

## III.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 비교

- 1. 자립지원 체계 비교 ..... 54
- 2. 자립지원 서비스 비교 ..... 57
- 3. 소결 및 시사점 ..... 67

<b>IV. 가출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b>	
1. '가정 밖 청소년' 법적 개념 정립 방안 .....	75
2. 청소년복지시설 법적 개념 개정 방안 .....	79
3. 청소년복지시설의 균형적 설치를 위한 법 개정 방안 ..	81
4.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	83
5.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방안 .....	85
6.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개편 방안 .....	92
<b>참고문헌 .....</b>	<b>97</b>

## 표 목차

표 II-1. 청소년쉼터 유형별 특징 비교 .....	14
표 II-2. 2020년 전국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수 .....	15
표 II-3. 연도별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설치·운영 현황 .....	16
표 II-4.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	17
표 II-5.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	17
표 II-6. 단기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	19
표 II-7. 중장기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	22
표 II-8. 청소년자립지원관 목록 (사·도 별) .....	24
표 II-9. 사·도 별 청소년쉼터 유형별 현황 .....	25
표 II-10. 사·도 별 청소년쉼터 1개소당 청소년 인구수 .....	26
표 II-11. 청소년쉼터 유형별 평균 이용 청소년 정원 .....	27
표 II-12. 청소년쉼터 유형별 설치 주체 .....	28
표 III-1.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설치기준 .....	58
표 III-2.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기준(숙박형 생활시설) .....	60
표 III-3.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기준(비숙박형 이용시설) .....	61
표 III-4.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64
표 IV-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정의 신설 (안) ..	77
표 IV-2.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 개념 규정 개정 (안) ..	80
표 IV-3.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관련 개정 (안) ..	81
표 IV-4.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기준 개정 (안) ..	84
표 IV-5.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안: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	86
표 IV-6. 현행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	92
표 IV-7.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 (안) ..	94

## 그림 목차

그림 II-1. 일시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0) .....	31
그림 II-2.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	31
그림 II-3.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	32
그림 II-4. 일시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 결과 (2010) .....	33
그림 II-5.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	33
그림 II-6.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	34
그림 II-7. 일시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 결과 (2010) .....	35
그림 II-8.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	35
그림 II-9.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	36
그림 II-10. 단기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0) .....	37
그림 II-11. 단기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	37
그림 II-12. 단기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0) .....	38
그림 II-13. 단기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	39
그림 II-14. 단기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0) .....	39
그림 II-15. 단기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	40
그림 II-16. 중장기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0) .....	41
그림 II-17. 중장기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	42
그림 II-18. 중장기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0) .....	43
그림 II-19. 중장기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	43
그림 II-20. 중장기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0) .....	44
그림 II-21. 중장기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	45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초반 민간기관에 의해 처음 설치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2010년 83개소였던 청소년쉼터는 2015년 119개소, 2020년 현재 132개소(자립지원관 포함시 14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청소년쉼터의 세부 유형구분과 각 유형별 기능은 2012년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가출 원인과 현상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변화 필요성 증대, 가출청소년을 비롯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관의 신설 및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즉, 청소년 가출 원인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자립지원 필요성 증대, 지역별 청소년쉼터 인프라 불균형,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새로운 유형의 신설, 아동복지기관의 청소년쉼터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왔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립하고, 지원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 조기개입을 위한 정책의 확대, 만성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 자립지원 기반 및 시설의 확대 등에 대한

제안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된 바 있음(백혜정, 방은령, 200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쉼터의 경우 세부 유형별 실제적인 기능과 역할에서의 차별성이 적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과 일시보호, 단기 및 장기보호 서비스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청소년의 가출 이유와 가출한 이후의 다양한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쉼터의 유형 및 서비스 체계화에 대한 요구가 현장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명칭 변경을 제시하고 있고, 청소년의 이용기간 중심의 현행 ‘일시-단기-중장기’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출 원인과 가정 밖 청소년의 특징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확대, 새로운 정책 수요 증대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출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쉼터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지원체계의 모색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의 기능과 구조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특히 청소년쉼터의 구조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연구 및 관계자들간의 일반적인 논의는 이미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현황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청소년쉼터의 현황 및 평가결과 분석,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춘 논의, 최종적으로는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 및 관련 시설의 개편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쉼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의 역사 및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더불어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청소년쉼터의 종합평가 결과 중에서 쉼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최근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자립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아동보호체계 유형별(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과 특성, 청소년보호체계 유형별(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셋째, 가출청소년을 위한 법적 개념 재정립 방안 및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중심 청소년복지시설 개편 방향 설정하되, 기능 중심 청소년쉼터 유형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각 유형 개편 및 유형별 중요한 기능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첫째, 가출청소년 현황이나 평가결과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 가출청소년 현장전문가, 관련 학과 교수, 관계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 정립 방안, 청소년쉼터의 기능 및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개편(안) 등에 대해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셋째, 가출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쉼터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구조개편 방향 등에 대한 FGI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sup>1)</sup>.

넷째,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마련된 청소년복지시설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간담회를 6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수시로 개최하여 가출청소년쉼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sup>2)</sup>

- 
- 1) 청소년쉼터 현장전문가 대상 FGI는 2020년 6월 30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202006HR-수시-002) 통보를 받고 진행되었음. 또한 다양한 관계자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위해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로 실시되었고, 연구진 및 인터뷰 대상자 등 참여자의 감염 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하에 안전하게 진행되었음.
  - 2)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관계자 FGI, 기타 간담회나 의견수렴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음.

## ○ — 제2장 청소년쉼터 현황과 종합평가 결과 분석

- 1. 청소년쉼터 변천 과정과 현황
- 2.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주요결과 분석
- 3. 소결 및 시사점



## 1. 청소년쉼터 변천 과정과 현황<sup>3)</sup>

### 1) 청소년쉼터의 변천 과정

#### (1) 1990년대 중반까지 : 청소년쉼터의 태동과 제도 진입기

1990년대 초반에는 민간의 종교시설 등에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시작했던 시기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서울YMCA가 운영하였던 청소년쉼터로 볼 수 있으며, 서울YMCA는 이미 1975년부터 서울역과 남대문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약 10일 미만으로 보호하고 귀가 조치하는 단기보호시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90년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YMCA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듬해 5월, “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청소년문제의 일환으로 가출청소년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3) 청소년쉼터 개요 부분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관계자가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종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서울YMCA는 청소년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시 가출청소년의 가족들은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라는 관점에서 실종자가족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청소년가출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앞서 수립된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복지분야에 청소년쉼터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의제가 수록되었고, 이를 근거로 서울YMCA는 가출청소년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체계를 요청하였다. 당시 민간에서는 살레시오수도회를 중심으로 가출 및 부랑아를 위한 지원과 돈보스코 나눔의집을 통한 입소 보호, 아주 어린 아이들은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 (2)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중반 : 청소년쉼터 확장기

청소년쉼터가 정책적 차원의 청소년보호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출청소년이 늘어나게 되고 사실상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의 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소년쉼터 지원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복지정책으로 인식되었다.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이 10일 미만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5개 광역시에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기초한 청소년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황진구, 김성경, 남미애, 정경은, 장소현, 2010).

청소년쉼터 종사자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연대를 통해 전문성 향상과 쉼터 운영에 대한 체계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998년 강남구청소년쉼터 개소를

기점으로 서울시립신림남자청소년쉼터, 서울시립금천청소년쉼터(2006년 명칭 변경), 대전광역시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청소년쉼터가 개소하면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실무자 네트워크가 조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00년 7월 청소년쉼터 현장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구성되어 같은해 9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조직으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2001년 청소년백서』부터 청소년쉼터에 대한 내용이 청소년백서에 수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쉼터 정책이 민간을 넘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청소년백서에서는 가출을 정서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선택으로 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충 및 정착이라는 시각에서 청소년쉼터를 바라보았으며,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보호 제공을 통해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는 목적으로 가출청소년쉼터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2002년도에는 국무총리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 개별적이고 임의적으로 활용하였던 각종 서류 양식과 개입 방법 등을 통일시킬 수 있었고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지침서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역시 전국 청소년쉼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사단법인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에서 2005년 사단법인화 작업을 통해 ‘이사장-회장-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후 정식 사단법인 등록을 통해 정부관계나 대외협력 관계를 위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만들었고,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청소년쉼

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였다. 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전에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 제14조 제3항에서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5월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국이 통합되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부서로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정책 전반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쉼터가 독립적인 정책분야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2004년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보호·복지시설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즉,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출청소년 선도·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운영지침이 매년 정책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단순한 가출청소년의 선도에서 위기 청소년 특성, 상황, 청소년 요구에 따른 시설확충 등 장기적인 청소년쉼터에 관한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청소년쉼터를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과 양적 증가 목표를 분명히 명시하게 됐다. 이밖에도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제도를 추진하고, 일시·단기·중장기쉼터를 미설치한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쉼터의 기능이 보호차원을 넘어서 상담, 자활, 고충처리, 문화프로그램제공 등 청소년종합선도터전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을 통한 복지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제거를 위해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강화,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 서비스 확충을 강조하였다(황진구, 김성경, 남미애, 정경은, 장소현, 2010).

### (3) 2000년대 중반 ~ 현재 : 청소년쉼터 유형별 정착기

2006년 이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기청소년안전망 사업이 확대되었고, 청소년쉼터는 체계적인 유형화를 갖추게 되었다.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유형 구분은 청소년쉼터의 역할과 지역별 특성이 함께 고려된 것이었으며, 쉼터를 이용하는 대상별·연령별·성별·상황별 등 분류 작업을 통해 쉼터별 특성화 및 전문성을 강조하게 됐다.

2007년부터는 청소년복지정책 방향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계획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정책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설정하였다. 즉, 2005년까지는 청소년쉼터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7년부터는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의 청소년쉼터는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체기의 주요 원인은 2008년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와의 서비스대상과 내용상의 중복문제에 기인한다. 이후 2010년에는 청소년 업무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쉼터 정책의 정체성 혼란 등이 이야기되었다(황진구, 김성경, 남미애, 정경은, 장소현, 2010).

청소년쉼터는 2014년에는 이전보다 6개소가 늘어 109개소 청소년쉼터가 운영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유형이 생겨났으며

2020년 현재는 전국 청소년쉼터 132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8개소 등 총 140개소가 운영 중이며, 쉼터의 유형별 보호기간 등은 아래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청소년쉼터 유형별 특징 비교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li> <li>- 가출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li> <li>-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 등</li> <li>-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li> <li>-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li> <li>-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li> <li>-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li> <li>*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li> <li>*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li> </ul>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출처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 2) 청소년쉼터 현황

### (1)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개요

2020년 7월 기준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132개소(청소년자립지원관 8개소 포함 시 140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일시청소년쉼터 32개소, 단기청소년쉼터 61개소, 중장기청소년쉼터 39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8개소가 운영 중이다(표 II-2).

유형별 개소수를 보면 단기청소년쉼터의 수가 가장 많으며(61개소),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쉼터의 비율이 약간 더 많다.

표 II-2. 2020년 전국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수

구분	일시 청소년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개소	32개소 (고정형 : 19) (이동형 13)	61개소 (남자 : 30) (여자 : 31)	39개소 (남자 : 18) (여자 : 21)	8개소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연도별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 등 특정 기간의 경우는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 83개 시설에서 2020년 현재는 140개 시설로 57개 시설이 증가하였다(표 II-3).

표 II-3. 연도별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설치·운영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130	140	140
일시	10	10	13	21	22	26	28	30	30	32	32
고정형	8	8	8	15	16	18	18	20	19	19	19
이동형	2	2	5	6	6	8	10	10	11	13	13
단기	49	48	49	50	50	52	51	53	62	62	61
남	24	24	25	26	26	26	26	27	30	31	30
여	25	24	24	24	24	26	25	26	32	31	31
중장기	24	25	30	32	37	41	40	40	38	40	39
남	10	10	11	11	16	17	18	18	18	19	18
여	14	15	19	21	21	24	22	22	20	21	21
자립지원관	-	-	-	-	-	-	-	-	-	6	8

\* 자료: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백서, p.190; 여성가족부. (2020). 내부자료

유형별로 볼 때, 2010년에 비해 2020년 현재 일시청소년쉼터가 22개 시설이, 단기청소년쉼터가 12개 시설이, 중장기청소년쉼터가 15개 시설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이 8개 시설이 각각 증가하여, 일시청소년쉼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쉼터의 증가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적극적 발견 및 보호,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보호시스템으로의 접근 유도 등 일시청소년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쉼터 유형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는 서울이 4개 시설로 가장 많으며, 경기지역에서 2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인천, 경상도, 울산, 충남, 전라 지역에는 일시 이동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 각 지역 내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의 역할이나 이동형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II-4).

표 II-4.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서울	종로구	-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서울	종로구	-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서울	강동구	-	(사)인터넷꿈희망터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권)	서울	강동구	-	(사)인터넷꿈희망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	(학)박영학원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대구	수성구	-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광주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광주	북구	-	광주YMCA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쉼터	대전	중구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김포시일시청소년쉼터	경기	김포시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경기	의정부시	-	(사)청소년문화공동체심대지기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강원	춘천	-	춘천YMCA
청주시일시청소년쉼터	충북	청주시	-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버프)	제주	제주시	-	성안복지재단

둘째,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 4개 시설로 가장 많으며, 광역시도 별로 보면 충청지역과 광주광역시, 경북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표 II-5).

표 II-5.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서울시립용산 일시청소년쉼터	서울	용산구	10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시립드림 일시청소년쉼터	서울	강남구	2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서울시립강북 드림일시청소년쉼터	서울	강북구	10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은평여자 일시청소년쉼터	서울	은평구	10	(사)엔젤스헤이븐
부산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5	(학)박영학원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대구	수성구	10	(사)흥사단대구지부
인천시 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별)	인천	연수구	15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시 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인천	부평구	15	(사)0청소년복지단체하늘목장
대전광역시 청소년드롭인센터	대전	동구	20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울산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울산	중구	10	(사)마이코즈
성남시 일시청소년 쉼터	경기	성남시	12	(사)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 (별사당)	경기	부천시	15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안양시 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경기	안양시	12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경기	남양주시	12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강원도 일시청소년쉼터	강원	춘천	10	춘천YMCA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강원	원주시	12	재)원주기독교청년회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디담돌)	전북	익산시	8	(사)익산실본
경상남도 일시청소년쉼터	경남	창원시	10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제주	제주시	12	제주대안교육센터

셋째, 단기청소년쉼터는 경기지역이 18개 시설로 가장 많으며, 충남지역이 6개 시설, 서울지역에서 5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표 II-6). 다만, 지역별로 설치된 쉼터의 개소수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6. 단기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서울	관악구	20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서울	강남구	20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서울	종랑구	20	(사)삼동청소년회
강남구청소년쉼터	서울	강남구	15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 화복지재단
강서청소년쉼터	서울	강서구	8	(사)새날청소년세상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15	(학)박영학원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	수영구	15	(재)불국토청소년도량
달서구청소년쉼터	대구	달서구	15	대구YWCA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대구	중구	15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남자, 바다의별)	인천	남구	20	(재)가톨릭아동청소년 재단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남자, 우리들)	인천	부평구	20	(사)인천아동청소년 희망재단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여자, 하늘목장)	인천	부평구	15	(사)청소년복지단체 하늘목장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여자, 하모니)	인천	남동구	15	(재)성산청소년효재단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	북구	10	광주YWCA
광주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	북구	10	광주YMCA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대전	중구	15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대전	중구	15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울산	북구	10	(사)마이코즈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울산	남구	10	(사)마이코즈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달보듬터)	경기	수원시	15	(사)참빛청소년상담마을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수원시	21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	성남시	15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성남시	15	(사)청소년이아름다운 세상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모퉁이)	경기	부천시	12	(재)성심수도회
용인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푸른꿈)	경기	용인시	14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징검다리)	경기	안산시	15	(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FORYOU	경기	안양시	15	(사)청소년의미래포유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오산시	14	평택YMCA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평택시	12	평택안성흥사단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시흥시	14	(재)가톨릭아동청소년 재단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시흥시	14	(사)가치있는누림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화성시	14	화성YMCA
고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 동지	경기	고양시	15	(사)행복한세상
구리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구리시	10	(재)두레문화마을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의정부시	15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의정부시	15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나르샤)	경기	이천시	7	(재)이천시청소년육성 재단
강원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	춘천	15	춘천YMCA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	춘천	15	춘천YMCA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	강릉	15	(사)문수청소년회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청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북	청주시	15	(사)월드유스비전청주시 중앙지회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느티나무	충북	청주시	15	(사)유스투게더
친구청소년쉼터(남자)	충북	충주시	7	(사)청소년이미래다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북	제천시	7	(사)청소년이미래다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천안시	15	(사)청소년만세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천안시	12	(사)청소년만세
아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아산시	14	충남옥령청소년육성 개발원
아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아산시	14	(사)푸른꿈행복한내일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홍성군	10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홍성군	10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북	전주시	10	(사)기독교청소년협회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북	전주시	10	(사)한울안운동
목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남	목포시	10	(사)청소년과미래자립 지원센터
여수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남	여수시	10	여수YWCA
여수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남	여수시	10	여수YWCA
경상북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북	구미시	12	(재)경상북도청소년 육성재단
구미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북	구미시	12	(사)청소년밝은세상
김해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경남	김해시	10	(재)김해YMCA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라)	경남	창원시	10	(사)하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	서귀포시	8	(사)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	제주시	9	(사)제주상담센터

넷째,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경기지역이 7개 시설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에서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 시·도별로 비교적 고른 수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표 II-7).

표 II-7. 중장기 청소년쉼터 목록 (사도 별)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서울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서울	관악구	10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서울	금천구	10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울	은평구	10	(사복)행복창조
어울림청소년쉼터	서울	강서구	7	아름다운세상(민간단체)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7	(학)박영학원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부산	금정구	10	(재)범어청소년동네
대구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대구	중구	7	(재)대구기독교청년회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대구	달서구	7	(재)대구기독교청년회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별마루	인천	남구	10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시중장기청소년쉼터 (여자, 예꿈)	인천	남동구	9	성산사랑의집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맥지쉼터)	광주	동구	7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광주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광주	서구	10	(사)청소년가족복지 상담협회
대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전	서구	7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전	서구	10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울산	울주군	10	(재)천주교예수성남전교 수도회유지재단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울산	남구	10	(사)마이코즈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	성남시	10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경기	성남시	10	(사)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용인시중장기청소년쉼터 (여자, 푸른꿈)	경기	용인시	10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안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호숙	경기	안양시	10	(사)청소년의미래포유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	군포시	10	온누리복지재단
고양열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	고양시	10	(사)꿈이준
구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	구리시	10	(사)민들레학교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강원	춘천시	8	천주교춘천교구사회복지회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강원	춘천시	8	춘천YMCA

시설명	시·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북	청주시	7	(재)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북	충주시	7	(사)충북가족지원센터
공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남	공주시	8	(사)청소년지도연구원 공주시지회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남	공주시	10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북	전주시	8	(사)사랑자리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북	군산시	7	(사)기독교청소년협회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남	목포시	9	(사)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 센터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북	안동시	7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북	포항시	7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북	포항시	7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경상남도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경남	창원시	7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클라라의집)	경남	진주시	7	(사)성장센터날개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	제주시	7	성안복지재단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	서귀포시	7	사회복지법인 예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경기지역이 3개 시설, 서울과 인천이 각 2개 시설, 충남지역에서 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시설 수가 8개 시설이지만 아직은 절반 이상인 5개 시설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 시·도별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고른 설치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표 II-8).

표 II-8. 청소년자립지원관 목록 (사도 별)

시설명	사도	시군구	정원	운영주체
서울시청소년자립지원관 (POLARIS)	서울	강동구	생활관16/ 주거지원 16	(사)인터넷꿈희망터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	관악구	32	(사)들꽃청소년세상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인천	부평구	생활관 8/ 주거지원 25	가톨릭아동청소년 재단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행복자리	인천	남동구	31	성산사랑의집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	의정부시	35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	군포시	40	온누리복지재단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	성남시	32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충남	천안시	생활관 8/ 사례관리 24	(사)청소년만세

(2) 청소년쉼터 현황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① 청소년쉼터 유형별 불균형

앞에서 살펴본 쉼터 유형별 전체 현황과 표 II-9의 시도 별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쉼터 유형별 수의 불균형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순 1회성 가출을 포함한 모든 가출청소년이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시이동형, 일시고정형, 단기, 중장기의 순으로 사회적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공급의 측면, 즉 쉼터 시설의 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 중장기, 일시고정형, 일시 이동형의 순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는 앞서 청소년쉼터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에는 주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 전체적인 수요나 공급의 측면보다는 개별 쉼터가 처한 여건에 따라 유형구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별 불균형은 현재 청소년쉼터가 지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유형별 기능의 분화가 취약하다는 점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9. 시도 별 청소년쉼터 유형별 현황

구분	총계										자립지원관
		일시	고정형	이동형	단기	남	여	중장기	남	여	
계	140	32	19	13	61	30	31	39	18	21	8
서울	19	8	4	4	5	3	2	4	1	3	2
부산	6	2	1	1	2	1	1	2	1	1	0
대구	6	2	1	1	2	1	1	2	1	1	0
인천	10	2	2	0	4	2	2	2	1	1	2
광주	5	1	0	1	2	1	1	2	1	1	0
대전	6	2	1	1	2	1	1	2	1	1	0
울산	5	1	1	0	2	1	1	2	1	1	0
경기	34	6	4	2	18	8	10	7	3	4	3
강원	8	3	2	1	3	1	2	2	1	1	0
충북	7	1	0	1	4	2	2	2	1	1	0
충남	9	0	0	0	6	3	3	2	1	1	1
전북	5	1	1	0	2	1	1	2	1	1	0
전남	4	0	0	0	3	2	1	1	1	0	0
경북	5	0	0	0	2	1	1	3	1	2	0
경남	5	1	1		2	1	1	2	1	1	0
제주	6	2	1	1	2	1	1	2	1	1	0

○ 지역별(시·도 별) 및 지역내 쉼터의 불균형

앞서 검토한 쉼터 유형별 불균형은 지역별 불균형과 연결되어 있다. 표 II-9에 나타난 시도 별로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이 34개 시설로 가장 많고, 서울이 19개 시설, 인천이 10개 시설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전남의 경우는 4개 시설

에 불과한 것처럼 전국의 지역별로 청소년쉼터의 개소수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관련되어 보다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 별 청소년쉼터 1개소당 청소년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10과 같으며,<sup>4)</sup> 쉼터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쉼터 1인당 10대 청소년수의 경우 평균 34,561명이었다.

표 II-10. 시도 별 청소년쉼터 1개소당 청소년 인구수

지역	쉼터 수	10세-19세 청소년 인구수*	시설 1개소당 청소년 인구수
전체	140	4,838,700	34,562.1
서울	19	794,131	41,796.4
부산	6	274,958	45,826.3
대구	6	228,864	38,144.0
인천	10	275,994	27,599.4
광주	5	159,172	31,834.4
대전	6	148,434	24,739.0
울산	5	113,185	22,637.0
세종	0	41,416	0.0
경기도	34	1,338,833	39,377.4
강원도	8	139,068	17,383.5
충청북도	7	150,379	21,482.7
충청남도	9	203,833	22,648.1
전라북도	5	176,668	35,333.6
전라남도	4	168,964	42,241.0
경상북도	5	227,836	45,567.2
경상남도	5	326,156	65,231.2
제주도	6	70,809	11,801.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인구현황-10~19세(2020년 8월 현재)  
<https://27.101.213.4/ageStatMonth.do#none>

4)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타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별 쉼터 개소당 청소년수를 상대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지닐 수 있음.

제주도의 경우는 1개 쉼터당 11,801명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의 경우는 65,231명으로 나타나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세부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일시청소년쉼터가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존재하며, 특정 유형의 쉼터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는 당장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일시청소년쉼터의 역할과 설치되어 있는 타 지역 일시청소년쉼터와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수요에 맞는 쉼터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청소년쉼터 유형별 평균 이용 청소년 정원의 불균형

전체 청소년쉼터의 이용 청소년 평균 정원은 12.5명이며, 유형별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평균 31.5명으로 가장 많고, 단기청소년쉼터 13.2명,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 11.8명의 순이다(표 II-11). 일시 이동형의 경우는 쉼터 특성에 따라 정해진 정원이 있지 않으며, 현원의 경우 입·퇴소의 특성상 수시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II-11. 청소년쉼터 유형별 평균 이용 청소년 정원

구분	전체							중장기			자립지원관
		일시	고정형	이동형	단기	남	여		남	여	
평균 이용 정원	12.9	12.3	11.8	13.5	13.3	13.3	13.3	8.5	8.4	8.6	31.6

청소년쉼터 유형별로 평균 이용 청소년 정원 수에서도 앞서 검토한 유형별 수나 지역별 수에서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형쉼터의 경우 중장기 쉼터(8.5명)보다 많은 12.3명이지만, 단기(13.3명)나 자립지원관(31.6명)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 민간 중심의 설립 주체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설립 및 운영 주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 80개소로 공립 60개소보다 많다(표 II-12).

표 II-12. 청소년쉼터 유형별 설치 주체

구분	지자체 (60개소)		민간 (80개소) <sup>5)</sup>	
	광역시	기초	법인	기타(개인/단체)
총계	40	20	79	1
일시	17	8	7	
고정형	9	5	5	
이동형	8	3	2	
단기	11	12	38	
남	6	4	20	
여	5	8	18	
중장기	9		29	1
남	4		14	
여	5		15	1
자립지원관	3		5	

민간의 경우, 단기청소년쉼터의 수가 38개 시설로 가장 많고, 중장기청소년쉼터 29개 시설, 일시청소년쉼터가 7개 시설이다.

반면에 지자체에서는 광역 지자체는 일시청소년쉼터가 17개 시설로 가장 많으며,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단기청소년쉼터가 12개 시설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5) 민간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시설 80개소의 경우 세부적으로 법인과 기타(개인/단체)의 구분이 모호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수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공립에서는 광역 지자체만 3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단기와 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수를 지역별로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일시청소년쉼터 등 쉼터 간 연계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쉼터 유형별 설립 및 운영주체, 전체 청소년쉼터 유형별 현황, 시도 별 청소년쉼터의 현황 등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은 결국 현재의 서비스 기간별로 구분되어 있는 청소년쉼터의 유형 구분에 따른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재의 서비스 기간별 유형구분이 보다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2.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주요결과 분석<sup>6)</sup>

### 1) 일시 청소년쉼터 평가결과

#### (1) 전체 부분 평가결과

#####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에 실시된 일시 청소년쉼터 평가는 이동형과 고정형의 구분이 없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분야별 개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보면, 전체 평균 총점은 86.4점이고, 재정 및 조직운영분야가 77.8점으로 나타나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용자 분야가 84.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92.1점, 지역사회 관계분야와 인적자원관리분야는 각각 88.0점, 82.1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I-1).

일시쉼터의 경우 청소년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연계나 이용자 관련 분야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6) 청소년쉼터 종합평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시설 환경의 적정성,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평가사업이 실시되었음. 여기서는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주요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발전, 변화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2010년(3차) 실시된 평가결과와 이후 9년이 지난 2019년(6차) 평가결과 중에서 쉼터 유형별로 전체 평가항목별 점수와 이용자 부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음. 다만, 2010년과 2019년 평가시에 적용된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며, 매년 각 지표별 평가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여 각 쉼터 유형별 전체 항목별 점수, 이용자 부분 점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의 점수를 살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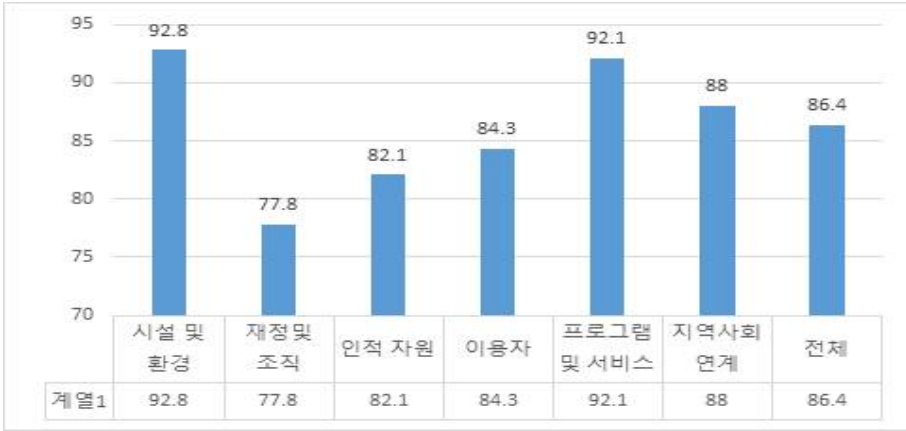


그림 II-1. 일시 청소년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0)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 일시센터 평가는 이동형과 고정형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먼저, 이동형 센터의 경우 전체 평균이 90.9점이었고, 이 중에서 인적자원관리 부분과 지속발전 및 특성화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II-2).



그림 II-2. 일시 이동형 청소년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둘째, 일시 고정형 쉼터의 경우 전체적으로 89.6의 결과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 인적자원관리 부분과 지속발전 및 특성화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II-3).



그림 II-3.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 (2)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 일시쉼터의 이용자 부분의 100점 환산 점수는 84.3점이었고, 이 중에서 이용청소년 현황이 88.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권리보장이 86.1점, 개인정보관리가 77.8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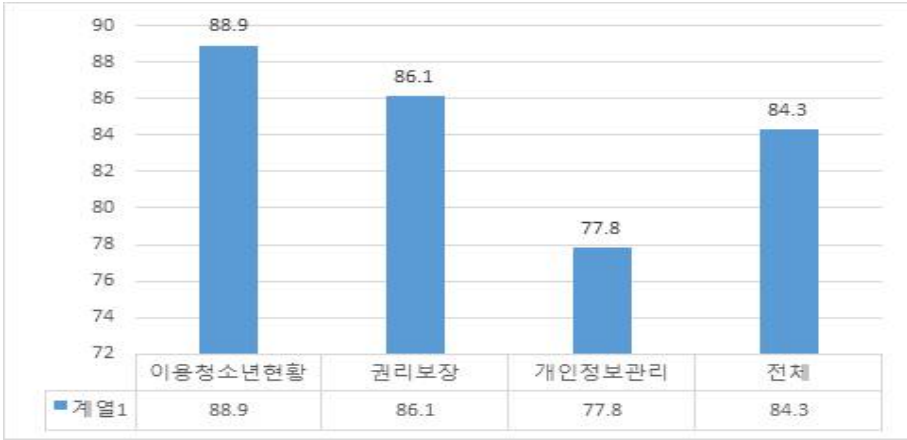


그림 II-4. 일시 청소년센터 이용자 부분 평가 결과 (2010)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 일시 이동형의 경우, 이용자와 관련하여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청소년 이용률로 78.1점이었으며, 이어서 의견수렴 등이 89.6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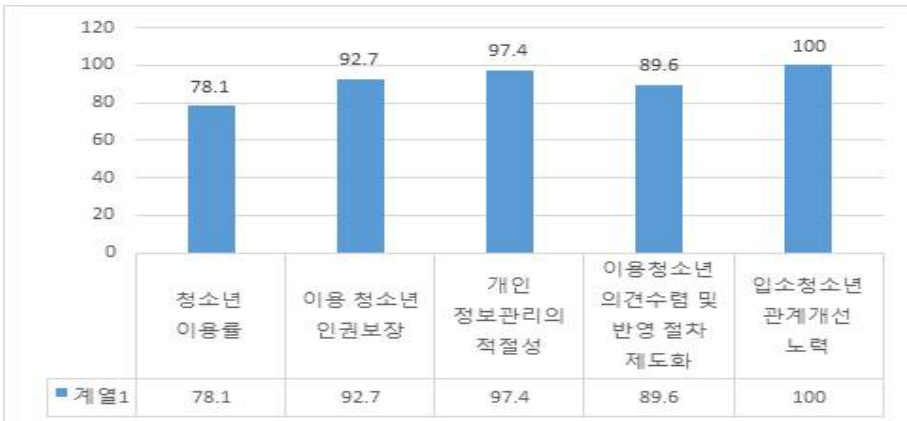


그림 II-5. 일시 이동형 청소년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둘째, 일시 고정형의 경우 이용 청소년 의견수렴이 85점, 인권보장이 86.7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세부지표별 편차는 2010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II-6).



그림 II-6.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2019년 일시 청소년쉼터의 이용자와 관련해서 보면, 일시이동형의 경우는 이용율에서의 점수가, 일시고정형의 경우 인권보장과 관련된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 일시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의 100점 환산 점수는 92.1점이었으며, 체계적 아웃리치 운영항목이 가장 낮은 75점으로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II-7).



그림 II-7. 일시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 결과 (2010)

② 2019년 평가결과

첫째, 2019년 일시이동형쉼터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거리상담 운영노력 점수가 68.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림 II-8).



그림 II-8. 일시 이동형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둘째, 일시 고정형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거리상담 운영계획이 91.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II-9).



그림 II-9.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 2) 단기 청소년쉼터 평가결과

### (1) 전체 부분 평가결과

####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 단기 청소년쉼터의 전체부분 평가결과를 100점 환산한 점수는 86점이며, 시설 및 환경분야가 92.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는 87.9점인 반면에 이용자 분야는 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II-10).



그림 II-10. 단기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0)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 단기 청소년쉼터의 평가결과 전체 100점 환산 점수는 90.1점을 받았으며, 시설 및 환경분야가 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는 94.9점, 이용자 분야는 90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I-11).



그림 II-11. 단기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 (2)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 단기쉼터의 이용자 분야 평가점수는 7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관리가 83.3점, 권리보장이 82.8점, 이용청소년 현황이 67.8점으로 나타나 이용 청소년 자체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II-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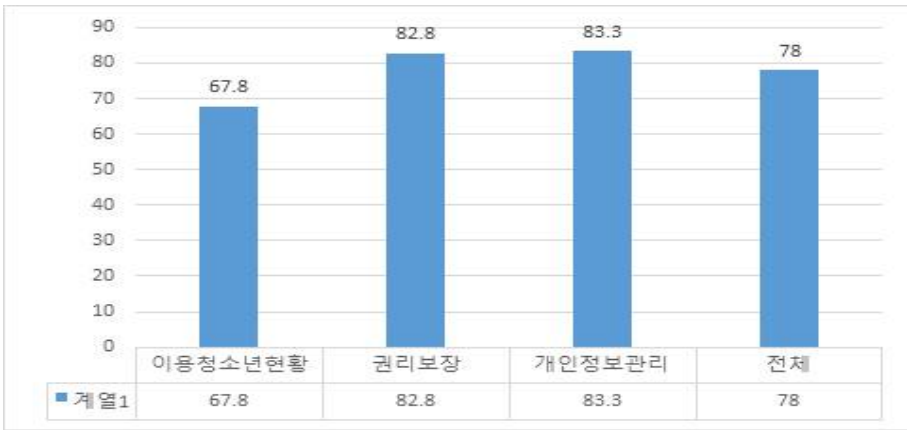


그림 II-12. 단기 청소년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0)

###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 단기쉼터의 이용자 분야 평가점수는 90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였는데, 모든 세부지표에서 90점 이상을 받았으나, 청소년 이용률의 경우 69.1점으로 나타나 2010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II-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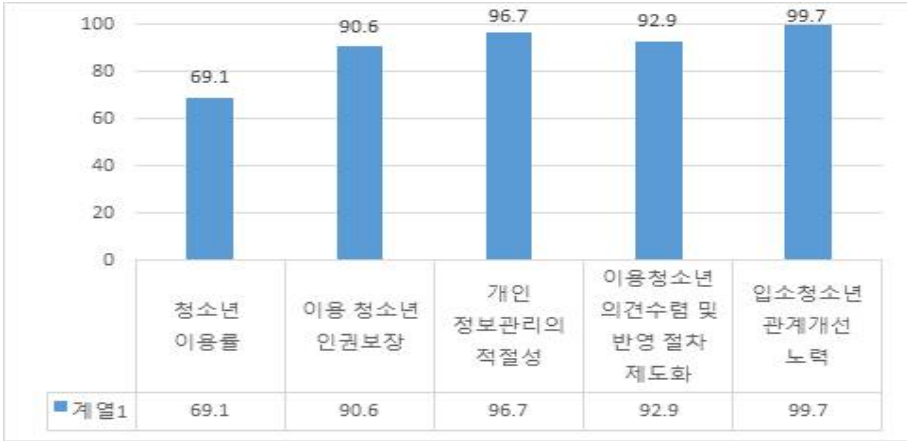


그림 II-13. 단기 청소년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① 2010년 평가결과



그림 II-14. 단기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0)

2010년 단기 컴퓨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의 세부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개별상담이 9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73.3점, 사회복지지원이 6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그림 II-14).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계획 및 평가 부분은 78.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II-15).



그림 II-15. 단기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 3) 중장기 청소년쉼터 평가결과

#### (1) 전체 부분 평가결과

#####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 중장기쉼터의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79.8점으로, 80점 이상 받은 분야는 시설 및 환경분야 87.2점, 지역사회 관계분야 82.2점이었고, 이용자 분야는 79.3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는 78.2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I-16).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자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평가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16. 중장기 청소년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0)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 중장기센터 평가의 결과 전체 평균은 86.7점이고, 주요 항목별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 연계활성화나, 청소년이용률 및 권리보호, 지속발전 및 특성화 노력에 대한 점수가 80점대를 보였다(그림 II-17).



그림 II-17. 중장기 청소년센터 전체 항목 평가결과 (2019)

(2)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 중장기센터의 이용자 분야 평가결과는 전체 79.3점으로, 이용 청소년 현황점수가 9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관리 81.5점, 권리보장은 6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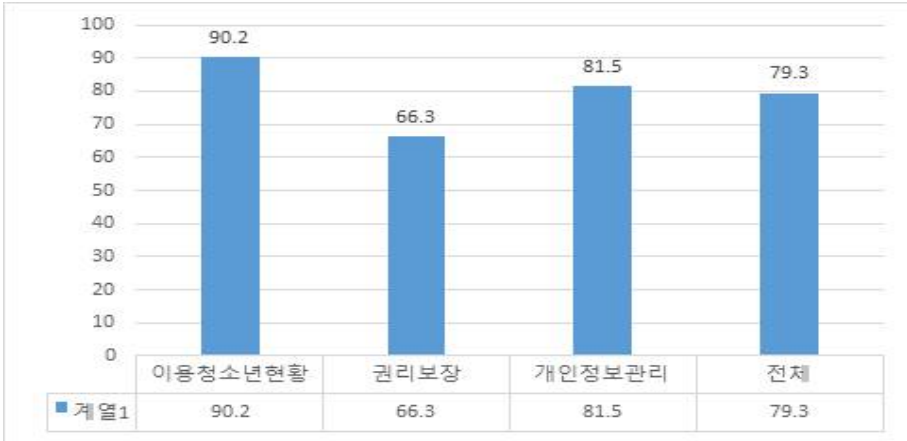


그림 II-18. 중장기 청소년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0)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의 경우, 2010년과 달리 청소년 이용률의 점수가 7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II-19).



그림 II-19. 중장기 청소년센터 이용자 부분 평가결과 (2019)

###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 ① 2010년 평가결과

2010년 중장기 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지표별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의식주 서비스 제공과 개별상담이 9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학업지원이 92.4점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79.3점, 사회적응 프로그램 73.9점을 받았으며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는 각각 4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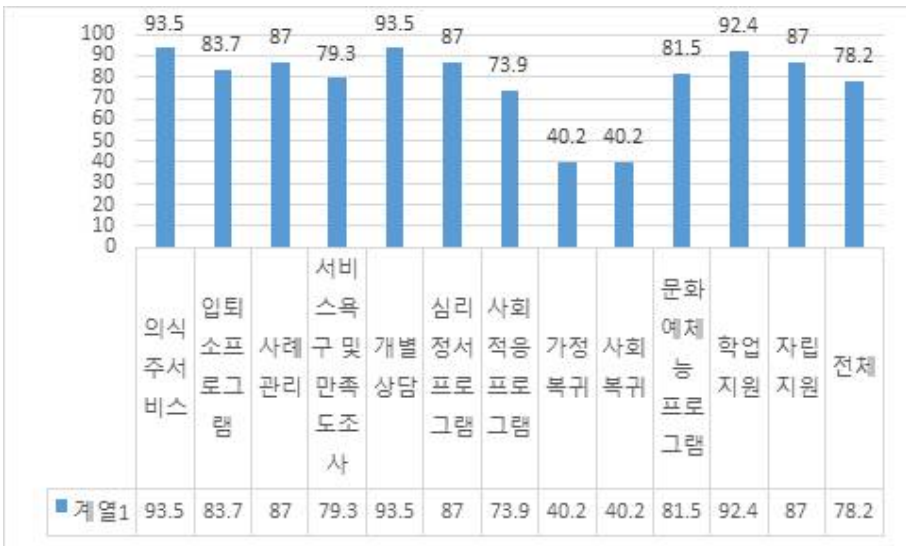


그림 II-20. 중장기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0)

② 2019년 평가결과

2019년의 경우 중장기 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의 세부 지표별 평가점수는 전체적으로 90점이상을 획득하였으며, 학업지원, 법률지원서비스가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보였다(그림 II-21).



그림 II-21. 중장기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결과 (2019)

### 3. 소결 및 시사점

#### 1)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가정밖 청소년' 개념 도입 필요

최근 거의 모든 유형의 청소년쉼터 관계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기존의 '가출청소년'이라는 개념이나 사회적 관점으로는 현재의 가출 관련 현상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작업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은 가정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자립지원 등 사회복지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회의와 현장 관계자 FGI에서는 “가출청소년은 부정적 어감이 강한데, 가출은 집을 나온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이지만, 아웃리치 현장에서 보면 가출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예방적 차원에서 가출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여러 아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가출에 대한 범위가 변화되어 왔는데, 모든 아이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쉼터 기능을 받아들여 왔다”,

“00시에서는 잠재적 의미에서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가출이라는 개념에 묶여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 밖'의 관점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회의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사결과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비율(생존형, 방임형, 시설형)은 일시고정형 이용 청소년의 60.4%, 단기쉼터 이용 청소년의 57.5%, 중장기쉼터 이용 청소년의 73.1%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쉼터 운영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쉼터는 “안전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제도이며, 가출이 아닌 가정으로부터 밀려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개입, 보호와 관심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가 초기 설립된 사회적 환경에 비해 현재의 여건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유형 개편 등을 위해 선행적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적 개념을 변경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쉼터의 수 부족 및 유형별·지역별 불균형

청소년쉼터의 현황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 청소년쉼터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쉼터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리고 동일 시도 내에서도 유형별 불균형이 심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쉼터 운영상의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용기간 기준의 유형 구분이 지닌 유효성에 대한 의문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자문회의와 현장관계자 FGI에서는 “현재 쉼터의 개편 관련 논의는 기능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기능과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다른 지자체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으로 단기에서 중장기로 보내려면 거리가 먼 00시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단기, 중장기 구분 없이 쉼터로 통합하여야 하는데, 도 직영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 쉼터 간 거리가 있어서 청소년의 전학 등 연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이다.”

“현재 00시에 있는 청소년쉼터들이 XX도에 있는 20여개 시·군을 모두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도별, 시·군·구별 인구 수, 가출 청소년 수 등의 차이로 인해 기능 개편 차원에서 유형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청소년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한 유형만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형 구분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기본적으로는 균형적인 유형별 수요에 맞는 공급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쉼터의 수요 조사 및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 차원의 설립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 3) 현 이용기간 중심의 쉼터 유형구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청소년 쉼터의 주요 현황과 2010년 및 2019년 실시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파악된 청소년쉼터 유형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일시쉼터의 경우 이용자 부분이나 지역사회연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에서 아웃리치 관련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 쉼터 본연의 기능의 활성화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의 경우 유사하게 이용자 관련 부분 및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이용자 현황 지표가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연구 자문회의나 FGI에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의 쉼터는 백화점식 구조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며, 쉼터의 유형별 전문적인 서비스 기능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일단 쉼터 기능개편의 첫 단추는 이용기간 중심 유형을 변경해야 한다... 이동 쉼터는 쉼터가 아닌 새로운 다른 유형의 시설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쉼터 유형의 모형은 단순 구조화가 필요한데, 00시의 경우 시청 입장에서는 지금 유형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개편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도 있다”,

“일시 이동형은 쉼터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동 일시와 고정형이 같은 유형으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고정형에서의 일시 보호 기능이 중요하지만, 고정형 역할은 단기쉼터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제안도 제시되었다.

특히 쉼터 평가와 관련되어 “고정형, 이동형 문제는 평가의 문제도 있고, 직원 수의 문제도 있다. 실제 실적 인원에서 이동형과 고정형 차이가 있고, 이동형과 고정형 문제를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이용 기간 중심의 쉼터 유형을 각 쉼터 유형별 전문화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유형으로 개편함으로써 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4) 기타 청소년쉼터 기능 강화 방안

첫째, ‘쉼터’라는 명칭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쉼터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현장이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쉼터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기타 사회적 환경 변화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적 명칭을 바꾸면 여러 복잡한 행정절차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용어와 사업적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현재의 지역중심의 쉼터운영 및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진행된 FGI에서 현장에서는 느끼는 애로점 중 하나로, “00시의 경우 아웃리치 사업을 진행할 때 00시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쉼터가 지닌 가출청소년이 지닌 본질적 특성과

도 연결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청소년쉼터의 유형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각 기능별로 세부적인 운영 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 — 제3장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 비교

- 1. 자립지원 체계 비교
- 2. 자립지원 서비스 비교
- 3. 소결 및 시사점



# 3

##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 비교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출행동’의 원인을 해결하는 접근과 ‘가정 밖 위기 상황’에서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의 가출행동이 ‘비행·일탈’이 아니라 일종의 ‘탈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요보호 아동’과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정책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미성년자가 원 가정에서 이탈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출청소년을 더 이상 우범소년이 아닌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여기서는 현재의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를 검토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상 가정 외 보호 하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와의 전반적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가출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보호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제도가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

원 체계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하고<sup>7)</sup> 이를 기반으로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1. 자립지원 체계 비교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체계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하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그리고 일선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원은 청소년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써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평가컨설팅 지원, 홍보 및 민관자원 발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개발원 내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에서 청소년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서에는 소수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쉼터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가출청소년 지원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동복지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기능상의 제약이 있다.

현행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먼저 시도 단위의 지원기관이 부재하다. 두 번째는 자립지원 대상인 가출청소년

---

7) 이 부분은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2020)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의 논조와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서비스 격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년이 청소년쉼터의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두 가지 특성 모두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개입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배치(입소)단계부터 퇴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가출청소년 보호절차는 청소년 당사자의 자의에 따라 시설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익명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쉼터를 퇴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쉼터 퇴소를 제재할 수 없고, 해당 청소년의 사례(case)에 대하여 쉼터에서 생활한 총 기간이나 지원 내용, 자립준비 정도에 대한 국가수준의 관리도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립 준비 지원의 특성 상 가출 상황에서 적절한 주거 대안 없이 시설 입·퇴소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2)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체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시·군·구이며, 사업 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과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일부 광역시·도), 일선의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으로 구성된다.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체계와 비교할 때 광역시·도 단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다만 국비(중앙)없이 지방비로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전담기관이 없는 광역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기관 간의 인력 배치와 서비스 전반에서 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유형은 크게 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과 위탁보호(가정위탁)로 나눌 수 있는데,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중앙과 광역시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시설보호는 2021년부터 보장원 내 자립지원부에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 중앙, 광역시도, 일선 시설로 이어지는 자립지원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체계에서 주요 기구로 아동복지협회를 들 수 있는데, 협회는 아동복지시설을 회원으로 하는 민간단체이다. 현재 일부 광역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양육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시설과 전담기관에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은 해당 시설에서 각각 담당한다.

한편,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15세 이상부터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시설 퇴소 혹은 위탁보호 종료 시 신청인이 반드시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퇴소 절차를 두는 것은 보호자의 무분별한 퇴소 요구를 제한하고, 반복적인 시설 입·퇴소로 인해 아동의 자립준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연장보호’도 가능한데 연장보호 역시 해당 시설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은 자립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체계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과 하위법령을 근거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판단된다.

## 2. 자립지원 서비스 비교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장선상에서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 1)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가출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자립지원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이다. 다만 본 조항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역할과 기능의 일환으로 ‘자립’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동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요약하면 현행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설 운영’을 통한 지원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 (1) 청소년쉼터의 자립지원 서비스

가출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는 현행 일시쉼터를 제외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앞서 청소년쉼터의 자립준비를 위한 물리적 환경부터 살펴보았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청소년쉼터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 및 중장기쉼터는 ‘상가건물’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상가건물은 생활권 내에 있어 아웃리치와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단기주택은 최장 9개월, 중장기주택은 최장 3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고 상가건물 특성 상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침실’기준을 보면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만 규정하고 있고, 침실의 인실 기준이나 1인당 적정 면적의 경우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법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표 III-1).

표 III-1.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설치기준

구분	기준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건물형태	■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조리실·식당	■ 채광 및 환기 가능 ■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화장실·목욕실	■ 남·여용 구분 설치 ■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세탁·건조장	■ 세탁 및 건조용 설비
상담실	■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단체활동실	■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
숙직실	■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

\* 자료 : 법제처,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0.11

반면, 아동복지시설의 침실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단,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

시설의 침실 1개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공동생활 가정은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출청소년이 일정기간 숙식을 하며 자립을 도모해야 하는 청소년쉼터는 건물형태와 침실 기준 면에서 아동복지시설과 단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시설의 환경은 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법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건물형태와 침실 기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침실의 인실 기준은 시설의 정원과 종사자 배치기준과도 연동되는 사안이므로 시설 운영 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검토와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퇴소 후 생활계획, 자립생활 준비, 사회적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쉼터는 지자체나 시설장의 허가 없이도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입소와 퇴소가 자유롭고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설 간 편차가 크다. 이 외 자립생활 준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다른 시설 입소를 연계하거나, 독립생활을 계획할 경우 주택 계약 과정을 일부 지원하기도 하며, 사회적응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법이나 위기상황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요약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지역별, 법인과 시설별로 지원 내용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 입소기간 중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와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없고, 시설 퇴소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안정적인 주거 대안 없이 퇴소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나, 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 불안 등 여건과 자립지원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통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지난 해 마련된 ‘아동 주거권 보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대하여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2년 이상 쉼터에서 생활한 경우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거 및 자립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서비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법적 설치 근거는 2012년에 이미 마련되었으나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숙박형 생활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숙박형 및 비숙박형 자립지원관의 설치기준은 표 III-2, 표 III-3과 같다.

표 III-2.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기준(숙박형 생활시설)

구분	기준
입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li> </ul>
건물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건물, 연립주택, 아파트 등</li> <li>■ 수용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li> </ul>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용·여성용 구분 설치</li> <li>■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li> </ul>
조리실·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 및 환기 가능</li> <li>■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li> </ul>
화장실·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여용 구분 설치</li> <li>■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li> </ul>
세탁·건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 및 건조용 설비</li> </ul>
상담실·사무실·숙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 구비</li> <li>■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숙직실로 통합운영 가능</li> </ul>
비상재해 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li> </ul>

\* 자료 : 법제처,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0.11.

\* 주 : 숙박형 생활시설은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임.

숙박형 자립지원관은 상가건물을 제외한 단독건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 설치가 가능한데, 청소년쉼터와 마찬가지로 침실의 인실기준과 1인당 적정 면적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전국에 8개소에 불과하여 청소년쉼터 퇴소자 전수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립준비 정도가 미흡한 가출청소년이 자립지원관의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세심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표 III-3.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기준(비숙박형 이용시설)**

구분	기준
입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li> </ul>
시설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li> </ul>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여용 구분 설치</li> <li>■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li> </ul>
상담실·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 구비</li> <li>■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운영 가능</li> </ul>
비상재해 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li> </ul>

\* 자료 : 법제처, <http://www.law.go.kr>, 인출일 : 2020.10.11.

\* 주 : 비숙박형 이용시설은 숙박 지원 없이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한편, 현재 자립지원관 1개소 당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사업비가 연간 2.5천 수준에 불과하여 생활관 입소(숙박형)를 제외하면 직접지원보다 자원연계를 통한 월세 지원이나 금융교육 및 저축 관리, 일상생활 상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비숙박형 자립지원관의 경우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사례관리가 통합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지원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법령을 근거로 국가차원의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자립정착금, 자립지원 수당이 제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2)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형태로 보호 중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과 하위법령의 해당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동법 제38조에서 자립지원의 내용을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지원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 관련 실태조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 (1) 주거지원

요보호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이 대표적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100만원, 월세 12~19만원,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9~17만원 (만 20세까지 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50% 감면) 수준에서 지원하며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2년 간 보증금, 월세를 면제하고 관리

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며, 사례관리사의 지원과 주택 당 150만원 이내에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의 사례관리비가 별도로 지원된다.

한편, 2019년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범위에 청소년쉼터 및 소년원 출원생이 생활하는 자립생활관 퇴소청소년이 포함되었다(국토교통부, 2019.10.24. 보도자료).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 대상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고, 매입이나 전세임대 뿐 아니라 건설임대 및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 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생활지원의 일환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전자는 보호가 종료된 당해 연도에 아동 1인 당 일시로 5백 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수당은 매월 30만원이며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이후 최대 3년 동안 본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 (2)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가 대표적이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다. 해당 아동이 후원자와 보호자 등의 지원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최대 월 5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만17세까지 정부 매칭 지원으로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에 적립된다. 단, 저축은 월 1천 원 이상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인출일 : 2020.10.11.).

한편, 적립금은 만18세 이후부터 만24세 미만까지 학자금(대학·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창업지원(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비, 시설 설치비), 취업훈련 및 기술자격(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운전면허 등 학원등록금), 주거 마련(임대아파트 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전세금 등), 의료비(진료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결혼자금(본인 희망 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외 자립 목적 이외의 해지는 제한된다. 단, 만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한 경우는 2회까지 조기인출이 가능하고 만24세 이후에는 별도의 사유 없이 해지 및 인출이 가능하다(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인출일 : 2020.10.11.). 적립금의 사용항목과 사용조건 등 세부 사용 용도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III-5이다.

표 III-4.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li> <li>■ 2(3)년제 대학</li> <li>■ 4년제 대학</li> <li>■ 대학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li> <li>■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li> <li>■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li> <li>※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 (정부매칭금 제외)</li> </ul>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자격증</li> <li>■ 국제자격증</li> <li>■ 국가고시</li> <li>■ 학원등록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 자격증은 가능</li> <li>■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li> <li>■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 등 취득을 위한 경우</li> </ul>
③ 창업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보증금</li> <li>■ 장비구입비</li> <li>■ 시설 설치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li> </ul>
④ 주거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아파트 보증금</li> <li>■ 전세금, 주택구입자금</li> <li>■ 월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li> <li>■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li> </ul>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⑤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 입원비</li> <li>■ 재활치료비</li> <li>■ 기타 의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li> </ul>
⑥ 결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및 결혼생활비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li> <li>※ 혼인신고서류 등 서류 제출(사후 지원 가능)</li> </ul>
⑦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사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lid=1142> (인출일 : 2020. 10.11)

### (3) 자립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2008년부터 매 4년 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 2차 조사인 2008년과 2012년에는 각각 양육시설의 보호아동과 연장아동, 보호종료아동만 조사하였으나 3차 조사인 2016년도 조사에서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올해 2020년도 4차 조사에서는 세 가지 보호유형별 보호아동과 연장아동, 보호종료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법정 실태조사는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자립지원 효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국가수준의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복지법」 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과 17개 광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개별 시설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양육시설과 기관의 경우 보호아동 100명 당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사례관리사 1인당 약 30명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보호아동 대상 자립지원은 지역별, 보호유형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법률과 하위법령을 근거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과 차이가 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거안정이 자립지원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주거지원과 사례관리가 결합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소결 및 시사점

앞에서 가출청소년과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를 검토하였으며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1)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근거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200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이 투입된 이래 지금까지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자립지원 강화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러나 「소년법」에서 청소년의 가출을 여전히 우범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책 전반에서도 가출청소년을 요보호아동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정책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러한 관점과 시각은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책 추진 전반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가출행동이 아닌 가정 밖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듯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도 가출청소년의 주거 등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가출청소년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정책이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 청소년쉼터의 주거환경 개선

청소년쉼터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출발한 생활시설이 아니다.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것도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목적과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과 비교할 때 시설의 설치기준 전반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생활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침실기준을 보면, 청소년쉼터의 경우 시행령에서 침실의 인실 기준이나 1인당 적정 면적을 규정하지 않아 과밀이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기 및 중장기쉼터는 상가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아웃리치와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거주하기에 적합한 형태라 볼 수 없다.

가출청소년에게 청소년쉼터는 ‘집’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이전에 주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시설이나 법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침실의 정원 기준은 시설의 정원이나 종사자 배치기준과도 연동되므로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중앙,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

한편,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것을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근거로 한 ‘노유자시설’에 포함되었다. 노유자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건물형태를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쉼터는 단독주택에 위치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을 받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 임대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이사 또는 신규 시설 설치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시설의 여건과 맞지 않고 동종 유사시설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하므로 별도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의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쉼터가 단독주택 등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건물형태와 구조를 갖춰 나가고, 보다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보다 집중하도록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3) 가출청소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대

가출청소년과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큰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거지원이다.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이 거의 유일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청소년쉼터를 기반으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그간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인데, 문제는 쉼터에 입소하지 않으면 주거문제를 해결하거나 여타의 자립지원을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가출행동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쉼터에서 생활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당사자가 쉼터 입소를 원하지 않아 거리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주거 불안이 2차적인 위기 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청소년쉼터가 과밀이나 사생활 보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쉼터의 아웃리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소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에 기여하여 자립지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쉼터의 생활환경 개선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가출청소년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즉, 가출청소년을 발견하여 자립을 지원 과정에서 쉼터 입소만 선택지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상황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립지원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거우선지원(Housing First)은 최근 노숙인 지원 사업에서도 적용하는 방식인데, 시설 입소 후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자립역량을 키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방식은 결국 시설 이탈과 동시에 그간의 자립준비 노력이 모두 무산된다. 이 경우 대상자들은 처음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자립은 그만큼 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반면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 후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시설 이탈 문제에서 자유롭고 인권에 부합하여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자립준비를 지원하기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지니므로 원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주거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시설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입퇴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거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해결하고 자립지원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4)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실태 법정 조사 추진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 이후 5년 간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고, 매 4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준비 정도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반면 가출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2016년 이후 격년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67001호)’를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가출 경험과 가출 기간, 가출 사유 등을 파악하는 것이 전부다.

이에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자립실태와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법정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가출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집단이 가출청소년 이외 다양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조사’와 같이 자립준비 정도와 자립지원 욕구 및 지원효과를 역동적으로 파악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는 별도의 법정 조사를 신설하여 자립지원 효과를 종단적으로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정비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아동의 경우 중앙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반면 가출청소년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할 뿐 정책대상으로서의 가출청소년 즉,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국비 투입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역할 및 기능 조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출청소년의 역동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자립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재편이 요구된다. 즉, 가출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뿐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주거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제4장 가출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

- 1. '가정 밖 청소년' 법적 개념 정립 방안
- 2. 청소년복지시설 법적 개념 개정 방안
- 3. 청소년복지시설의 균형적 설치를 위한 법 개정 방안
- 4.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 5.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방안
- 6.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개편 방안



### 1. ‘가정 밖 청소년’ 법적 개념 정립 방안

#### 1) 배경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시설로, 기존의 가출이라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부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밀려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개입, 보호와 관심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던 시대의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에 비해 최근의 가출 청소년이 처한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역할, 유형 개편 등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정의 규정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근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법적 개념 정립에 대한 재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7. 1. 2.)’에서 인권보장 측면에서 가출청소년 관련 정책이 실행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의 변경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에서의 권고이다.

청소년쉼터 현장의 관계자들도 “가출은 집을 나온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이며,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가출’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법적 정의 중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제 그 내용의 설정하여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법적 개념 규정 정립 세부방안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려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관련 정책의 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정책의 목적은 가정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이 안정된 가정이나 주거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지 못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향후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김희진, 김은정, 백혜정, 2018).

따라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일반적인 가출을 포함하여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 방임과 더불어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같은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 관련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원인을 불문하고 가정을 떠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규정하는 방식, 둘째, 가정을 떠나 있다는 사실과 가정을 떠나게 된 원인을 동시에 충족시킨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 셋째, 가정을 떠나 있다는 사실

과 가정을 떠나게 된 원인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킨 경우로 규정하는 방식, 넷째, 가정을 떠나 있다는 사실과 가정을 떠나게 된 원인에 덧붙여 정책적 필요를 같이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적-긍정적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일부 청소년만을 정책적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소극적 차원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집을 나온 청소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 내 학대나 폭력 등을 원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청소년과 더불어 가족에 의해 쫓겨난 청소년, 가정 해체 등을 이유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 백혜정 외 2015). 관련된 법령 규정상 유사한 예로는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은 정규의 교육과정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를 가정의 기능 상실, 가정의 해체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정책 목적인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2조(정의) 관련 개정(안)을 제안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정의 신설 (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 2. “청소년복지”란 -----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	

현 행	개 정 안
<p>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p>	<p>5. “가정 밖 청소년”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신설)</p>
<p>이하 관련 일부 조항 개정(안) 사례</p> <p>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①-----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며,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 ----- -----</p>

### 3) 관련 고려 사항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은 단순히 명칭 변경 수준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 영향 감소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정의를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 방임,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학교밖 청소년관련 법령과 같이 (가칭)“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이어져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복지시설 법적 개념 개정 방안

### 1) 배경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와 더불어 '자립'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자립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관의 이용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다수의 가출 및 위기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자립지원관의 법적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주요 기능에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와 더불어 '자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세부 개정 내용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 중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개념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 개념 규정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p> <p>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p> <p>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p>	<p>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p> <p>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안)</p> <p>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안)</p>

### 3) 관련 고려 사항

청소년쉼터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개정(안)의 경우, 기능 중심의 청소년쉼터 유형 개편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가정 밖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내용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립지원관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고 설정하였음에도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현장 관계자의 의견 중에는 “단기쉼터나 중장기쉼터가 아닌 일시청소년쉼터를 통해 직접 자립지원관으로 연계되는 사례의 경우, 일시청소년쉼터의 발굴(아웃리치)을 통해 가출팸 생활이나 노숙 생활을 하다 곧바로 자립지원관으로 연계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3. 청소년복지시설의 균형적 설치를 위한 법 개정 방안

#### 1) 배경

청소년쉼터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다양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전체 청소년쉼터의 수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적다는 점과 더불어 쉼터의 지역별, 유형별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동일 시도 내에서의 불균형은 현행 이용기간 기준의 유형 구분 자체의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균형적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가정 밖 청소년 규모 등은 청소년쉼터의 균형적 설치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파악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 세부 개정 방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안하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관련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 규모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u>청소년복지시설을 균형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 3) 관련 고려 사항

청소년복지시설의 균형있는 설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적 구분이 모호하거나 특정 신도시의 등장 등으로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독자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하여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쉼터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사회의 사회적 안전망 장치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국가에서는 ‘매년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법 규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해당 지자체에 대해 조금은 강제성을 부여하면 좋겠다”.

“지방의 경우 청소년 인구 수, 청소년의 유동이 적은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 신규 시설을 개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소율에 근거한 시설운영 평가에서 벗어나 긴급지원시설로서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4.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 방안

### 1) 배경

요보호아동과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 체계 및 서비스 비교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개최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관계자와의 협의회에서 “모든 유형이 청소년 보호와 함께 ‘자립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자립지원 등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이라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제3장에서 제시한 몇가지 제안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2) 세부 방안

첫째, 관련 법령의 내용 중 청소년쉼터 자체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관련 법령에서는 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시설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침실기준의 경우 기준이나 1인당 적정 면적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침실의 정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과 관련된 개정(안)을 제안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기준 개정 (안)

구분	기준
입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li> </ul>
건물형태 및 규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li> <li>■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li> </ul>
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li> <li>■ <b>1실 2인 이하 수용 권장 (신설)</b></li> </ul>
조리실·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 및 환기 가능</li> <li>■ 위생적인 취사·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li> </ul>
화장실·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여용 구분 설치</li> <li>■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li> </ul>
세탁·건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 및 건조용 설비</li> </ul>
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li> </ul>
단체활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li> </ul>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를 위한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li> </ul>
숙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li> </ul>
비상재해 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구비</li> </ul>

※ 관련 법조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둘째,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요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종료 이후 5년 동안 사후관리와 더불어 매 4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되어서는 법적으로 별도의 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조사나 관리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며, 이는 앞서 제안한 청소년복지시설 균형 설치를 위한 법 개정 방안과 그 맥을 같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방안

### 1) 배경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청소년자립관의 전국적인 세부 유형별, 시도별 분포는 일정정도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청소년쉼터의 태동과 변천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전국적이고 지역별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별 불균형적인 설치 현실이 쉼터 유형별 규정된 기능 자체를 명확히 수행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7.1.2.)’에서 입소기간에 따른 유형별 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쉼터별 특성이 부재하여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일시쉼터가 갖고 있던 본래의 아웃리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 과정에서 진행된 자문회의나 기타 현장 관계자의 FGI에서도 현재의 복지시설 유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쉼터의 경우 균형적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기존 설립된 시설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 중심의 청소년쉼터의 유형 개편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따라서 개인시설의 경우 협동조합이나 법인 시설로의 전환과 현재 일시, 단기, 중장기 중심의 기간중심의 운영방식에서 기능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이용기간 중심’의 청소년쉼터 유형 기준을 ‘기능 중심’으로 검토하여 전체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세부 개편 방안 및 고려사항

### ①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방안 및 고려사항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의 유형 개편(안)을 제안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개편 (안: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현행 : 기간 중심)		(개편 안 : 기능 중심)	
1) 일시쉼터 (일시-7일) - 일시이동형 쉼터	(변경) ⇨	1) 아웃리치센터 (일시)	
- 일시고정형 쉼터(7일)	(변경) ⇨	2) 청소년쉼터 - 일시형 청소년쉼터 (3일)	
2) 단기쉼터 (3개월)	(통합) ⇨	- 일반형 청소년쉼터 (3년)	
3) 중장기쉼터 (3년)			
4) 자립지원관 (1년)	⇨ (유지)	3) 자립지원관 (1년)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의 유형 개편(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별 각 청소년쉼터 유형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 쉼터별 가 연계할 기관이 충분치 못한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앞서 논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관련 법적 조항과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 중심의 유형 개편의 세부적인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즉,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전국의 모든 지역이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쉼터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쉼터에 인력이나 예산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능만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종사자의 소진을 증가시켜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관계자들은 “쉼터 고유 사업과 입소·이용 청소년들을 고려한 기능 중심의 운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모든 쉼터 유형이 있는 지역과 일부 유형만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일부 유형만 있는 지역의 경우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예산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특별한 여건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능개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에 일부 쉼터 유형만 존재하여 다른 유형 쉼터의 역할이 필요하거나, 해당 지역 쉼터로 입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만의 특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00도, 00시 등 모든 유형의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 중심의 유형 개편의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진행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일반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이용 청소년의 쉼터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충 및 네트워크 사업의 강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② (현) 일시형청소년쉼터 관련 개편 방안 및 고려사항

현행 일시형의 경우 이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2개의 유형은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용 가능한 기간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기능상으로도 차이가 크다.

관련해서 현장의 관계자는 “일시고정형은 7일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이 있고, 버스형태의 이동형과 보호소 형태의 고정형의 차이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동형버스는 가출 청소년의 즉시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며 쉼터로의 연계와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 개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별적인 가출청소년의 욕구 만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고정형은 “아웃리치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즉시적인 연계를 통한 일시보호, 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일시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24시간 상시로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유형으로 묶여있는 일시이동형과 일시고정형을 분리하여 기능 중심으로 별도의 유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일시이동형 청소년쉼터는 주요 기능 및 특징을 반영하여 ‘아웃리치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주요 기능인 아웃리치(찾아가는 + 길거리 상담)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주된 사업 대상이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전반에 맞추어져 있고, 주요 사업목적 및 내용이 거리상담, 가정 밖 청소년 발굴에 맞추어야 한다. 특히 시설로서의 특징보다는 장비 중심의 운영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시설로서 쉼터 유형에서 제외하고 아웃리치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변경하여 관련된 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기청소년 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거나 축소되어 아웃리치의 정의와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기관과 연결하거나 지역의 보호체계 및 시설의 연계, 통합 전달체계와 연결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아웃리치센터에서 발굴된 청소년 중에서 특정한 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기능은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국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일시 고정형 청소년쉼터는 별도의 명칭인 (가칭)‘일시형 청소년쉼터’로 변경하고, 현재 주요 기능인 발굴된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일시 보호, 사정 등의 수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기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3일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7일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가정 밖 청소년 수나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입구(Gateway)로서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시형쉼터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입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용 청소년이 다른 시설로의 연계를 거부하거나 지역 내에 청소년복지시설이 부족한 경우 일시형청소년쉼터에서도 일정 정도의 직접적인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상으로 일시형청소년쉼터에 기본사업으로 “아웃리치사업”을 포함하여 긴급 보호 및 연계 뿐 만 아니라 선제적 사업인 청소년 발굴 기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 ③ (현) 단기 및 중장기쉼터 관련 개편 방안 및 고려사항

(현) 단기 및 중장기쉼터의 경우 ‘청소년쉼터’로 단일화하여 유형을 통합하고, (가칭)‘일반형 청소년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에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단기와 중장기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능과 보호기간을 동일하게 통일하되, 보호기간의 경우 기본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최장은 기존 중장기쉼터 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된 현장 관계자 의견으로는 “쉼터 종사자는 청소년들을 오래 만나야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례관리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입소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고, 독립준비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3년 단위로 만 24세까지 해당 나이를 늘려야 한다”,

“현재 기관별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이 보다 복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 쉼터의 경우, 학습지원, 정서지원, 직업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보다 사업에 초점을 두어 기관들과 연대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촘촘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퇴소 후에도 청소년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현) 자립지원관 관련 개편 방안 및 고려사항

자립지원관의 경우 명칭이나 주요 기능을 유지하되, 앞서 검토한 것처럼, 보호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현행 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 국한에서 ‘청소년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에 기반한 사례관리 중심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현장의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에도 특히 주거 및 자립에 대해서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후기 취약청소년(19~24세) 자립지원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중장기청소년쉼터가 자립지원관으로 유형을 변경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며, 청소년의 취업 준비 및 자립지원 등 기존의 업무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추후 자립지원관의 세부적인 유형(숙박형, 비숙박형, 혼합형)에 대한 논의 및 서비스의 세부기준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6.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개편 방안

### 1) 배경

청소년복지시설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시설 유형별 기능 변화에 따라 종사자의 업무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종사자 배치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능에 맞는 종사자 배치기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쉼터 유형의 변경은 외형적 차원에 머물게 되고 결국은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먼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현행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종사자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10명 미만	10~15명 미만	15~20명 미만	20~25명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1
보호·상담원	4	2	3	5	6	2	-
자립지원요원	-	-	-	-	-	-	1
행정원	-	-	-	1	1	-	-
조리원	-	-	-	1	1	-	-
행정원 또는 조리원	1	1	1	-	-	1	1
합 계	6	4	5	8	9	4	3

\* 출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위의 현행 종사자 배치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일시쉘터의 경우 이동형과 고정형의 유형에 관계없이 종사자 배치기준 모두 동일하다는 점, 둘째, 단기쉘터만 수용정원에 따라 종사자 배치기준 차별을 두고 있고, 중장기쉘터와 자립지원관의 경우 수용정원에 관계없이 종사자 배치기준 동일하다는 점, 셋째 행정원과 조리원 등 일부 직원의 배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밖에 단기쉘터의 '10~15인 미만' 시설과 '15~20인 미만' 시설의 종사자 수 3명 차이 완화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 2) 세부 개편 방안

청소년쉘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의 개편과 관련된 몇가지 원칙을 설정하면, 첫째, 종사자의 세부적인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정원과 조리원의 배치기준의 경우 '행정원 또는 조리원'으로 구분함으로써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립지원요원의 경우 청소년자립관에 1명만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정부차원에서 실제 지원되고 있는 인력 및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야간보호사 또는 야간보호상담원', 거리상담 전문요원(아웃리치) 관련 배치 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형 청소년쉘터의 경우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배치기준에 차등을 두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몇가지 방향과 각 쉘터별 기능을 고려하여 검토한 청소년쉘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안)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 (안)

종사자 구분	아웃리치 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일시형 쉼터	일반형쉼터				
			~9명*	10~14명	15~19명	20~24명	
시설장	1	1	1	1	1	1	1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2	3	2	3	3	5	4
거리상담 전문요원	3	3	-	-	-	-	-
야간보호 상담원	-	2	2	2	2	2	-
행정원 또는 취사원	1	1	1	1	2	2	1
합 계	7	10	6	7	8	10	6

\*) 수용정원이 5명 이하 시설의 경우 보호·상담원/자립지원요원과 야간보호상담원을 각 1명으로 할 수 있음.

먼저, 종사자의 직종 구분과 관련하여, ‘거리상담 전문요원’과 ‘야간보호상담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실제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행정원과 취사원 관련하여 현실적인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단은 ‘행정원 또는 취사원’으로 명시하여 운용의 유연성을 유지하였다. 이 밖에 야간보호 상담원의 경우 야간 돌발·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인 이상 근무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인 이상을 기본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개편된 청소년쉼터 유형별 종사자 배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리치센터(기존 일시이동형)의 경우, 기존 총 6명의 배치기준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는데, 거리상담전문요원을 3명으로 강화하였고, 보호·상담원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아웃리치센터의 경우 장기적으로 그 기능과 유형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종사자의 배치 기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시형쉼터(기존 일시고정형)의 경우, 기존 총 6명의 배치기준을 총원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야간보호상담원 2명과 거리상담전문요원 3명을 추가하는 동시에 보호·상담원 3명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일반형쉼터(기존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경우, 수용정원 기준으로 총 4명에서 9명까지였던 배치기준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전체적으로 야간보호상담원 2명을 동일하게 배치하였고 보호·상담원의 경우 수용정원 청소년 수에 따라 2~5명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넷째, 자립지원관의 경우 기존 배치기준 3명(시설장 1명, 자립지원요원 1명, 행정원 또는 조리원 1명)을 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는데, 주요 확대 대상은 자립지원요원의 수이다. 다만, 자립지원관의 경우 향후 이용 청소년의 수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3) 관련 고려 사항

앞에서 제시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배치기준 개정(안)의 경우 명확한 업무나 직무분석 등에 기초하지 못하고 기존 배치기준과 현 지원 인건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지닌 제안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 유형개편(안)과 더불어 각 유형별 종사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보다 섬세한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 (2017).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결정문**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김은정, 백혜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18-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김승경, 박세경, 정경은 (2016).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가출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 **청소년백서**. 서울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 **2019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0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황진구, 김성경, 남미애, 정경은, 장소현(2010).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자 문 협 력 진 ◆

(가나다 순)

- 고민좌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 김국중 광주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 김민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장
- 김은영 서울시립강북청소년일시쉼터 소장
- 마재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 백현숙 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 염지혜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
- 오재진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소장
- 이계석 대전이동일시청소년쉼터 소장
- 이정훈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서북권 소장
- 전선영 부산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 전성원 강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 전종수 의정부시일시이동형청소년쉼터 소장
- 정진해 전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 최윤정 대구 달서구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 한태경 부천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연구보고 20-R20

---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인 쇄 2020년 11월 10일

발 행 2020년 11월 1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0-R20

##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http://www.nypi.re.kr)